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3호
2. 발 의 자 : 심미경 의원 외 33명
3. 발의일자 : 2022. 8. 29.
4. 회부일자 : 2022. 9. 2.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용어 띄어쓰기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3. 기 타

○ 입법예고(2022.9.7. ~ 9.11.)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 심미경 의원 외 33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123호로 발의되어 202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문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명칭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제1조는 예산과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舊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제159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에 규정된 인용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개정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현행 조례의 “건립기금”을 “건립 기금”으로 하여 조문의 띄어쓰기를 조례의 제명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이는 기금 명칭이 제명 상 기금 명칭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2021년 1월 12일로 같은 법이 그 시행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향후 관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이후 자치법규의 후속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500, 2022.9.6.).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